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탄녹위 당연직 위원에 기후환경정책 보좌관 추가 등>
■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55호)

2025. 9.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탄녹위 당연직 위원에 기후환경정책 보좌관 추가 등	3
※ 참고자료	9
1.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요	9
2.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절차	11
3.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추진체계도	12

I. 제안경위

2025년 6월 20일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정책 시행기관이 아닌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환경정책의 주무기관인 환경부를 통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가 없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의2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탄녹위 당연직 위원에 기후환경정책 보좌관 추가 등

개정안은 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에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② 탄녹위 심의·의결 대상에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16조제6호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u>국무조정실장</u>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생략)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 ----- ----- <u>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u>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 ⑨ (생략)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14.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23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u> 7. ~ 14.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4항1)에 따라 탄녹위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²⁾으로 구성하고, 동법 제16조³⁾에 따라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국가전략 및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3조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전략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 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을 말한다.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⁵⁾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여 결과를 검토받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1,2,3).

참고로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도시(29건), 에너지(10건), 산단(7건) 등 총 68건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완료하였음.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탄소중립시·도계획, 탄소중립시·군·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5.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현황]

(단위: 건)

계	본안 협의완료(68)				초안 협의완료(113)				협의중 ¹⁾ (21)			
	도시	에너지	산단	기타	도시	산단	에너지	기타	도시	산단	에너지	기타
202	29	10	7	22	59	16	10	28	6	4	2	9

주) 보완 중 협의 현황 : 총 4건 (산단3, 에너지1)

자료: 환경부

다만, 탄녹위 의결 사항을 환경부를 통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가 부재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부처간 의견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⁶⁾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의 탄녹위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에 대한 공식적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정책 이행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을 해소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대하여 환경부는 탄녹위 당연직 위원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 비서

6) 국회미래연구원,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2025.5.21.

국회입법조사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25.4.21.

관을 위원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⁷⁾가 필요하다,

기후환경영향평가는 일부 계획·사업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정·중재 대상을 기후변화영향평가로만 한정하기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전반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7) 유사한 심의 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등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참고1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요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국가의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분석·평가토록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23조)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추진

2

주요 내용

- ① (대상)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 ('22.9.25.~)

- 온실가스 다배출 6개 분야(65개), 기후변화 고리스크 4개 분야(18개)로 총 10개 분야(83개 계획·사업)를 선정, 배출량에 따라 단계적 시행*

*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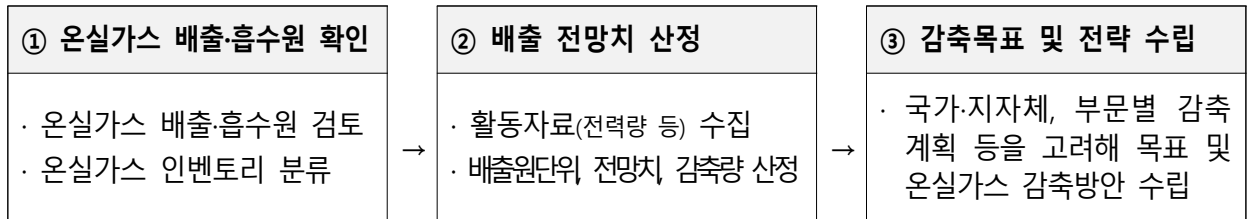
구분	분야	시행시기
온실가스 다배출	◆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22.9.25. ~
	◆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23.9.25. ~
기후변화 고리스크	◆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22.9.25. ~

- ② (추진체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기후변화에 대한 중점 검토를 위해 전문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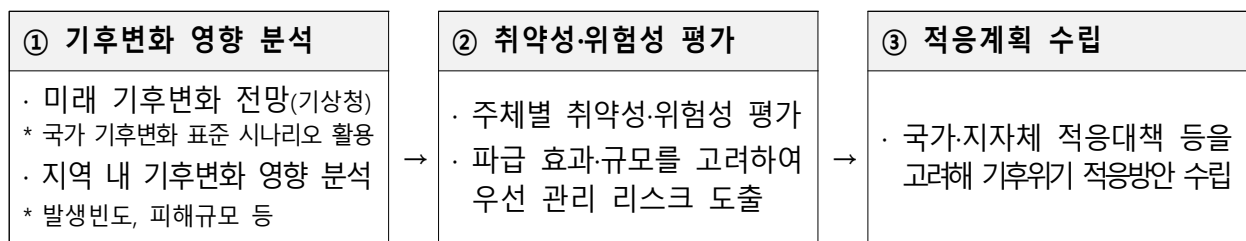
* KEI, 온실센터, 기후위기적응센터, 과학원, 기상과학원, 환경공단, 생태원

③ (평가방안)^{<감축>} 사업별 감축목표를 산정해 실효적인 감축방안 수립,
^{<적응>} 계획별 우선 관리 리스크를 도출해 적응방안을 수립

- (감축) 국가·지역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원·전망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 설정 및 실효적 감축전략 수립



- (적응) 기후변화 전망, 취약성·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우선 관리 기후위기 리스크 도출 및 적응방안 수립



3

기타 통계

□ 협의 현황

- (진행 현황) ^{본안기준} 68건 처리완료('25.6.25 기준)

계	본안 협의완료(68)				초안 협의완료(113)				협의중*(21)			
	도시	에너지	산단	기타	도시	산단	에너지	기타	도시	산단	에너지	기타
202	29	10	7	22	59	16	10	28	6	4	2	9

* 보완 중 협의 현황 : 총 4건 (산단3, 에너지1)

참고2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절차

	기후변화영향평가 운영 절차		관련 근거
준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사 업 자>	기후변화영향 내용을 포함해 작성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방법 규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수립 기관장, 승인기관 등>	기후분야 위원 추가* → 평가항목 선정 *기후 분야 공무원, 민간 전문가	· 협의 규정
초안 작성	↓ 평가서 초안 작성 <사 업 자>	기후평가서 초안 작성 <사 업 자>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방법 규정
	↓ 관계부처 및 주민의견 수렴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용	· 방법 규정
평가서 검토 및 협의	↓ 평가서 작성 <사 업 자>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방법 규정
	↓ 평가서(환경+기평) 제출 <사업자→승인기관>	필요시 컨설팅 요구 → ← 목표설정 등 컨설팅 수행	· 협의 규정
	↓ 평가서(환경+기평) 협의요청 <승인기관 등→ 환경부, 지방관서(자연국 등)>	제출 통보 →	·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협의 규정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검토기관 및 전문가 의견 종합적 검토	← 검토 의견 회신	
	↓ 협의내용 결정·통보 <환경부 등→승인기관→사업자>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환경부(기후국)> 검토기관 및 전문가 의견 종합 검토 * KEI, 온실가스 정보센터, 적응센터, 과학원 등	
	↓ 협의내용 반영확인·통보 <승인기관→환경부 등>	·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준용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협의내용 이행, 사후관리 등	
협의 내용 이행	↓ 협의내용 이행 <사 업 자>		· 협의 규정
	↓ 협의내용 관리·감독 <승인기관 및 환경부 등>		

참고3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추진체계도

